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그 휴업·폐업·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”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전단 중 “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다목3) 중 “수입신고”를 “정밀검사, 무작위표본검사”로, “검사”를 “수거·검사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.

별표 7 I. 일반기준 제11호나목 중 “제조·가공”을 “제조·가공만 하거나, 수입·위생처리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란 제3호 중 “「청소년보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 제3호 중 “「청소년보호법」”을 “「청소년 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다목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」”을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

· 검사의뢰 규칙」 ”으로, “시험수수료액 표”를 “시험·검사 수수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를 하는 영업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)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·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<u>그 휴업·폐업·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·폐업 등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7조(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0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「 <u>부가가치세법</u> 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「 <u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</u> 」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	② ----- ----- 「 <u>부가가치세법</u> 」 제8조제7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용한 송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 ③·④ (생 략) 제26조(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) ① (생 략) ②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 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	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26조(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